

##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연금저축계좌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연금저축계좌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-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

◇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, ②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(5.5~3.3% 또는 퇴직소득세의 60~70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적용<sup>1)</sup>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.

(☞ 다만 연금수령이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임)

1)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: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수익  $\Rightarrow$  5.5~3.3% 적용  
이연퇴직소득  $\Rightarrow$  퇴직소득세의 60~70% 적용

1. 세액공제 :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에서 13.2%<sup>1)</sup> 또는 16.5%<sup>2)</sup> 세액공제율 공제

1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초과인 경우

2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인 경우

## 2. 연금수령 요건(연금소득세 적용)

## ① 가입 후 5년 경과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

\*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요건 미적용

## ②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

- 연금수령 한도 = 연금계좌의 평가액  $\div$  (11 - 연금수령연차)  $\times$  120%

##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(5.5~3.3% 적용)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납입기간(5년 이상) | 연금수령기간        |
| 5년 이상       | 연금수령기간(5년 이상) |

## 연금저축 가입 연금수령 개시(55세 이후) 연금수령 종료

◇ **증도 해지**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("연금외 수령")의 경우 **기타소득세 (16.5% 지방소득세 포함)**가 부과<sup>1)</sup>되므로 **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(5.5~3.3%)**보다 **높은 세율**이 적용되어 **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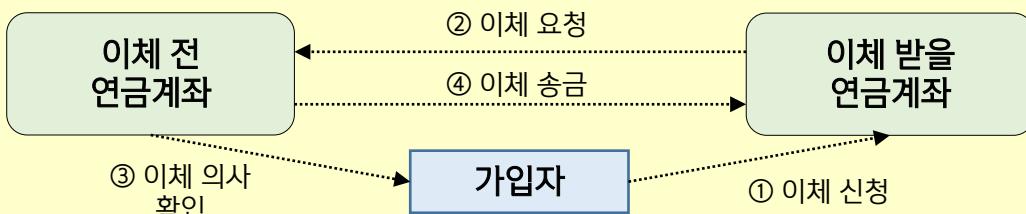
1) 기타소득세 적용대상 :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+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

### 기타소득세(16.5% 적용)

## 중도 해지, 인출 등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

## 연금저축 가입 연금수령 개시(55세 이후) 연금수령 종료

- ◇ 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가 가능하며,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. 단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 까지 이체가 제한됩니다.



※ 핵심설명서는 연금저축 핵심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약관 등을 확인바랍니다.

※ 담당부서 :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(☎ 1588-1122)

## <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>

### ■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
| 구분   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---|--|
| 상품특징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6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.2%<sup>1)</sup> 또는 16.5%<sup>2)</sup>까지(지방소득세포함) 세액공제</li> <li>▪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</li> </ul> |
| 연금수령 및 수령 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연금 수령 :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수령개시, 매년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<br/>※ 연금 외 수령 :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</li> <li>▪ 수령 한도 : 연금계좌의 평가액 / (11 - 연금수령연차) X 120%</li> </ul>   |
|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가입대상 : 제한 없음(단, 비거주 외국인 불가)</li> <li>▪ 납입한도 : 일반 납입액 1,800만원 + 만기 ISA 계좌 내 금액 + 주택차액 + 부동산차액(주택·부동산 합산 1억원)(전 금융기관 합산,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</li> </ul>   |
| 세액공제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당해 연도 납입액의 13.2%<sup>1)</sup> 또는 16.5%<sup>2)</sup></li> </ul>  |
| 보수, 수수료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 또는 가입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(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</li> </ul>  |
| 계좌이체 및 계좌승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계좌이체 :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, 단,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</li> <li>▪ 계좌승계 :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</li> </ul>   |

1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초과인 경우

2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인 경우

### ■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| 구분     | 증권사      | 은행     | 생명보험   | 손해보험    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상품     | 연금저축펀드계좌 | 연금저축신탁 | 연금저축보험 | 연금저축보험   |
| 납입방식   | 자유납      | 자유납    | 정기납    | 정기납      |
| 연금형태   | 확정       | 확정     | 종신, 확정 | 확정(~25년) |
| 예금자보호법 | 적용되지 않음  | 적용     | 적용     | 적용       |

### ■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

#### ①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

-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② 투자위험등급

- 고객님께서 운용지시한 상품에 따라 본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 위험)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, 편입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#### ③ 연금저축계좌 세제

| 구분   | 납입시     | 연금외수령시         | 연금수령시 (의료비, 부득이한 사유 포함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제종류 | 세액공제 혜택 |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| 연금소득세                   |

-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부과합니다.(소득세액공제확인서,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필요)

-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(퇴직금 등 제외)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- 계좌 내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, 연금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~70%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.

-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# <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사항>
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, 상담센터(1588-0365) 및 당사 홈페이지([www.shinhansec.com](http://www.shinhansec.com)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# 연금저축계좌 설명서

◆ 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상품 개요 및 특징

- ① 상품명 : 연금저축계좌
- ② 상품특징 :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,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

## 2. 연금저축계좌 가입 및 납입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계좌 종류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연금저축펀드 : 자본시장법(§12조)에 따른 투자증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(이하 펀드) 증개계약</li></ul>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가입 대상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제한 없음</li></ul>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납입 한도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연간 1,800만원<sup>1)</sup> + ISA 만기계좌의 전환 금액<sup>2)</sup> + 주택차액<sup>3)</sup> + 부동산차액<sup>4)</sup><br/>1) 전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, 연금저축계좌 합산<br/>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ISA)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<br/>3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고령 가입자가 주택거래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<br/>4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<br/>(주택차액과 합산 생애 누적 1억원 한도)<br/>※ (참고)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<br/>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<br/>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</li></ul>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세액 공제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연간 600만원(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) + ISA 전환금액의 10%(300만원 한도)<table><thead><tr><th>총 급여액<br/>(종합소득금액)</th><th>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<br/>대상 금액 한도</th><th>세액<br/>공제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5,500만원 이하<br/>(4,500만원)</td><td rowspan="2">600만원</td><td>16.5%</td></tr><tr><td>5,500만원 초과<br/>(4,500만원)</td><td>13.2%</td></tr></tbody></table></li></ul> <p>1) '22년 이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300만원 또는 400만원<br/>2) '23년 이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600만원으로 인상</p>  | 총 급여액<br>(종합소득금액) | 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<br>대상 금액 한도 | 세액<br>공제율 | 5,500만원 이하<br>(4,500만원) | 600만원 | 16.5% | 5,500만원 초과<br>(4,500만원) | 13.2% |
| 총 급여액<br>(종합소득금액)       | 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<br>대상 금액 한도  | 세액<br>공제율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5,500만원 이하<br>(4,500만원) | 600만원   | 16.5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5,500만원 초과<br>(4,500만원) |   | 13.2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### 3. 연금저축계좌 운용 및 이체

| 구분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|---|
| 운용방법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연금저축펀드계좌</b> : 가입자는 계좌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금저축전용펀드(종류형 펀드의 연금저축계좌 전용클래스 포함) 및 ETF(인버스 레버리지는 금지), 상장리츠,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상장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상장 수익증권에 한하여 편입가능</li> <li>- 투자일임서비스(랩서비스) 가입을 통한 운용일임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 |
| 보수 및 수수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별 연금저축계좌 약관,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 및 가입서비스 약관을 참고</li> </ul>  |
| 계좌이체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 되는 경우 이를 <b>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로 다른 종류(신탁, 펀드, 보험)간의 이체도 가능하며,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</li> <li>- 단,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됩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 <p>① 연금계좌('01.1월 이후 개설)에서 타 연금저축계좌('13.3월 이후 개설)로의 전액이체<br/> ② 연령이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<sup>1)</sup>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(이하 개인형IRP)로 전액이체<br/> ③ 연령이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<sup>1)</sup>이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<br/> ④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의 전액이체<br/> 1)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요건 미적용</p> |
| 계좌승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<b>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함</li> <li>-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(상속인)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  |

### 4. 연금수령 및 인출

| 구분   | 내용   |
|------|--|
| 연금수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연금수령 요건 : 55세 이후 및 가입기간 5년 경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요건 미적용</li> <li>-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, 수령주기,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<b>연금수령 개시를 신청</b> 하여야 <b>연금수령 가능</b></li> <li>-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,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, 금액, 환매순서 등을 지정</li> </ul> </li> <li>■ <b>연금수령한도 : 연금수령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, 한도를 초과 하는 금액은 '연금외 수령'에 해당</b> <math display="block">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^1)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^2)} \times \frac{120}{100}</math> </li> </ul> <p>1) 연금저축 신탁펀드 : 기준가 × 누적좌수<br/> 2)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,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</p> |

| 구분   | 내용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반적인 경우 :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나 ☞ 연금외 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</li> <li>■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: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☞ 연금수령으로 간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시기 :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</li> <li>-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부득이한 사유</th> <th>인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천재지변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</td> <td>O<sup>1)</sup>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td> <td>O<sup>1)</sup>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td> <td>X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                | 부득이한 사유 | 인출한도 | 천재지변 | X |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| X |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| O <sup>1)</sup> |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| O <sup>1)</sup> | 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| X |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| X |
| 부득이한 사유  | 인출한도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천재지변   | X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| X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| O <sup>1)</sup>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| O <sup>1)</sup>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| X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| X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1)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ㄱ)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</li> <li>(ㄴ)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(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) × 150만원</li> <li>(ㄷ) 200만원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
## 5. 적용세제

- ①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, 연금수령 대비 고율의 과세가 적용됩니다.
- ② 연금저축계좌의 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'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'를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| 내용   |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자금인출 순서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①과세제외금액 → ②이연퇴직소득 → ③과세대상소득(세액공제 받은 금액+운용소득)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참고)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(ISA 전환금액 제외)</li> <li>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된 금액</li> <li>③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(600만원)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</li> <li>④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<br/>(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'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연금수령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</li> <li>■ 이연퇴직소득 :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시, 60%</li> </ul> </li> <li>■ 과세대상소득 : 연금소득세(3.3%~5.5%)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확정형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나이<br/>(연금수령일 현재)</td> <td>70세 미만</td> <td>5.5%</td> </tr> <tr> <td>80세 미만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80세 이상</td> <td>3.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(퇴직금 등 제외) 1,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</p> |      | 구 분 | 확정형연금 |  | 나이<br>(연금수령일 현재) | 70세 미만 | 5.5% | 80세 미만 | 4.4% | 80세 이상 | 3.3% |
| 구 분              | 확정형연금  |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나이<br>(연금수령일 현재) | 70세 미만   | 5.5% |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80세 미만   | 4.4% |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80세 이상   | 3.3% |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
| 구분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|---|
| 연금 외<br>수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</li> <li>▪ 이연퇴직소득 : 퇴직소득세 100% 부과</li> <li>▪ 과세대상소득 : 기타소득세 16.5% 적용</li> </ul> |

## 〈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〉



☞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임

## 6. 가입자 유의사항

- ①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개별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② **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, 투자상품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**
- ③ 당사 인터넷홈페이지([www.shinhansec.com](http://www.shinhansec.com)), 금융투자협회([www.kofia.or.kr](http://www.kofia.or.kr)), 금융감독원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[설명의무 이행 확인]

“본 연금저축계좌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고객에게 교부된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”

신한투자증권 \_\_\_\_\_ 지점(센터) ☎: \_\_\_\_\_

직위: \_\_\_\_\_ 직원명: \_\_\_\_\_ (서명)

※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상에 사용된 금융용어 중  
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QR코드를 찍으세요.  
금융감독원 FINE에서 제공하는 금융용어사전을  
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「금융용어사전」

금융감독원 FINE web page


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 [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신설된 제도 안내 ]

### 1 청약의 철회

- **일반금융소비자는**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**투자성 상품** :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**7일**(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이내
  - 대상상품 : 모집형 고난도 펀드, 고난도 투자일임계약, 신탁(금전신탁제외), 고난도 금전신탁
  - 효력발생 :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(이하 "서면등")를 발송한 때
- **대출성 상품** :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**14일** (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이내
  - 대상상품 : 신용거래, 주식담보대출, 청약자금 대출 등
  - 효력발생 : 일반금융소비자가 "서면등"을 발송하고 계약에 따른 금전, 재화, 용역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
-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(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전, 재화등과 이자 수수료등을 반환받은 날)로부터 **3영업일 이내**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받은 금전, 재화등(대출성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)을 반환(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회사가 부담)

### 2 위법계약의 해지

- **금융소비자는**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'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**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"1년" 이내의 기간에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"5년" 이내)**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대상상품 : **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**
  - 진행절차 :
    -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
    - ② 회사는 **"10일"**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고(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른 예외 가능)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
  - 주의사항 :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
### 3 자료의 열람 요구

- **금융소비자는**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'에 따라 **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**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진행절차 :
    - ① 열람의 목적, 범위, 방법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
    -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**"6영업일"**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
    - ③ 회사는 '6영업일' 이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
  - **유의사항**: 단,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